

	철도용품 공사규격서 도상저항측정기	KRCS G085 01 제정 2014. 10. 17.
---	-------------------------------------	----------------------------------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철도선로(자갈도상)의 도상횡저항력을 측정하는 도상저항측정기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KS, KRS,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3. 제품구성

3.1 도상저항측정기 및 설치에 필요한 공구, 보관케이스

4. 필요조건

4.1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후 풀림 또는 이동이 없어야 한다.

4.2 목침목, PC침목의 체결형식별 설치가 가능하고 측정이 되어야 한다.

4.3 제품의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4.4 물품 외부에는 물품의 규격 또는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표시되어 물품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4.5 계약자는 물품의 품명 및 규격 등에 관한 의문 및 기타 사항이 발생시에는 계약 전에 충분히 사전 질의를 하여 확인 받도록 하고, 계약 후에는 한국철도공사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성능 및 규격

5.1 장비성능

5.1.1 장비중량 : 10kg 이내

5.1.2 측정범위 : 1m내에서 0kgf ~ 2000kgf 까지 저항력 측정가능

5.1.3 설치범위 : 목침목(스파이크, 타이플레이트, 베이스플레이트 부설 침목), 50kg, 60kg PC침목 (Fast-클립, W형-클립, e-클립)에 설치가 가능하고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5.1.4 기상조건 : 대기온도 -10℃ ~ +40℃ 및 우천시 측정 가능할 것

6. 검사종류와 시험

6.1 검사

6.1.1 검사의 종류

- (1) 결모양검사
- (2) 수량검사

6.1.2 검사의 방법

- (1) 겔모양검사, 수량검사는 전수검사 한다.
- (2) 검사장소는 납품장소로 한다.

6.2 시험

6.2.1 시험의 종류

성능시험

6.2.2 시험방법

철도공사가 제시한 장소에서 검사담당자 및 물품구매부서 입회하에 계약 상대방이 전수 제품에 대하여 5.1.1~5.1.3에 대하여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하고 만족하여야 한다.

단, 시험이 어려운 5.1.4에 대해서는 원제작사의 성능입증자료(품질보증서, 공인기관 시험검사성적서 등)로 확인 한다.

6.3 합격기준

6.1.2 검사 및 6.2.2 시험방법에 만족 할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7.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7.1 품질보증

7.1.1 품질보증기간(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7.1.2 5항의 성능을 만족하는 원제작사의 성능입증자료(품질보증서, 시험검사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교육훈련

7.2.1 교육은 납품장소에서 계약 상대방이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한다.

7.2.2 도상저항측정기의 운용 및 장비검수 교육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납품 시에는 운용교육(측정, 유지관리방법) 4시간, 검수교육(조립, 해체, 검수) 4시간 이상

7.2.3 장비조작요령, 장비유지관리요령(영점조정 및 검·교정방법 등 이 포함된 점검지침서), 장비의 세부부품명, 조립도 등 수리 및 보수매뉴얼, 장비제원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컴퓨터 파일 및 인쇄물로 납품하여야 한다.(제조사 원문과 이에 대한 번역본으로 각각 제출한다.)

7.3 사후관리

7.3.1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사항 중 부품의 설계, 재료, 제작 등의 결함으로 측정기에 대해 수리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해당부품 교체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7.3.2 장비 고장시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계약 상대방은 주요부품 수리에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고 정비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1.1 보관함에 1대씩 포장하되 운반이 편리하도록 하며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8.2 표시

8.2.1 제품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한국철도공사 휘장 및 주요성능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8.2.2 포장상자 표면에는 한국철도공사 휘장, 품명, 제작회사명, 제작년월, 수량 및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9.1 본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관련 지적재산권(특허, 의장등록, 실용신안 등)에 대하여 타인 및 단체의 권리침해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지지 않는다.